

예 산 총 칙

예산총칙

2018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01,660,557	9,049,817
일반회계	283,605,269	8,508,158
특별회계	18,055,288	541,659
공기업특별회계	9,474,030	284,221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9,474,030	284,221
기타특별회계	8,581,258	257,438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42,159	1,265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	318,631	9,55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37,766	13,133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604,637	48,13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455,482	73,664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722,583	111,677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 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조서"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789,345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5,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금회 추경 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명시이월, 계속비 포함)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